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3. 18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3. 3. 1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3. 3. 11
- 라. 상정일자 : 2003. 3. 18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가. 제정이유

- 인감증명은 시민의 재산권 등 행사에 중요한 사항으로 인감관계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감관계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을 위한 보험(신원보증보험 포함)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인감관계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인감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로 함(안 제2조).
-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함(안 제4조).
-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변상책임액은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함(안 제5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의 구축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부합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 조는 제정목적과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관리책임자, 재정보증 및 한도액, 보험료의 청구, 변상, 보증보험증권의 보관관리 등 인감담당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표준안과 상이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제3항의 내용중 보험계약 방법에 있어 표준안에서 제시하지 않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을 명기한 것은 인감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의 업무담당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계약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삽입한 사항으로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경우에도 제3조제4항에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없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42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 . (제 회)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3년 3월 11일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안 번호	제 42 호
----------	--------

제출년월일 : 2003. 3. 11.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정이유

- 가. 인감증명은 시민의 재산권 등 행사에 중요한 사항으로 인감관계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어,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감관계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 나.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을 위한 보험(신원보증보험 포함)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인감관계공무원의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인감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자로 함.(안 제2조)
- 나.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함. (안 제4조)
- 다.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변상책임액은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함.(안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나. 예산조치 : 7,680천원(추경에 확보)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따로붙임 ①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표준안

② 인감증명법시행령증개정령 발췌

③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서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①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중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① : 행정자치부 표준안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군수, 이하 동일)이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중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②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인감증명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867호, 2002.12.31

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붙임③ :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서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정1995.03.08 조례 제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지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 보증) ①지방자치단체장등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인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조례 제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